아트투게더 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신구대조표

(■등재 위치: 홈페이지 메인 하단 > 서비스이용약관)

현 행	물품소유자 회원 개정(2023.09.03개정)	투자자 회원 개정(2023.09.03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현행과 동일)	**제 1 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 **중 미술품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4. (생략) 5. 물품 : 미술품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예술창작품이나 기타 거래가 가능한 동산으로써 사이트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4. (현행과 동일) (삭제) **5. 투자계약 : 회원과 회사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회사가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이하"투자계약")을 말합니다.** (신설)
6. 투자계약증권 : ~~회사가 공모 또는 사모에 의하여 회원과 회사간의 공동사업(이하 "투자계약")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회사가 수행한 투자계약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여 발행한 증권(이하 "증권")을 말합니다.	(삭제)	6.투자계약증권 : **투자**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여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이하 "증권")을 말합니다.
7. 투자회원 : 회원 중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증권 거래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8. 물품소유자 회원 : 회원 중에서 회사가 2022 년 11 월까지 운영하였던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물품에 대하여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이 발행된 물품에 대한 물품소유자 회원은 투자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 회원** : 회원 중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위한 청약과 양도·양수 등** 거래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7. 물품소유자 회원 : 회원 중에서 회사가 2022 년 11 월까지 운영하였던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물품에 대하여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이 발행된 물품에 대한 물품소유자 회원은 **투자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7. **기초자산 : 미술품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예술창작품이나 기타 거래가 가능한 동산으로써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 보관, 처분 등을 하는 투자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신설) 8. **투자자 회원** : 회원 중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위한 청약과 양도·양수 등** 거래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삭제)

9. 청약 : 공모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회원으로부터 증권 매수의 신청을 받고,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기준에 의하여 사이트의 회원 ID 에 연동되는 정보에 증권의 취득 여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삭제)	9. 청약 : 공모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회원**으로부터 증권 매수의 신청을 받고,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기준에 의하여 사이트의 회원 ID 에 연동되는 정보에 증권의 취득 여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서비스 이용 약관(투자자 회원) : 투자자 회원이 투자계약과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약관과 별도로 열람하고 동의하여야 하는 약관입니다. (신설)	
제 3 조~제 4 조 (생략)	**제 3 조~제 4 조** (현행과 동일)	**제 3 조~제 4 조** (현행과 동일)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등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등**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등**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제한)** (현행과 동일)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현행과 동일)
1. 증권의 발행, 투자계약의 수행, 청산손익의 지급 : 회사는 직접 선정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물품에 관한 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 형태로 발행하고,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 손익계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수행하며, 청산손익을 지급합니다.	1. (현행과 동일)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공동사업**의 수행, 청산손익의 지급 : 회사는 직접 선정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기초자산**에 관한 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 형태로 **모집 또는 매출**하고,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 손익계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청산손익을 지급합니다.
2. 증권의 청약과 취득 : 회사는 회원이 증권을 청약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서비스 : 회사는 투자 회원이 물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자정보제공, 투자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증권의 청약과 취득 : 회사는 **투자자 회원**이 증권을 청약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서비스 : 회사는 **투자자 회원**이 물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자정보제공, **투자자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물품소유자 회원이 기존에 누리던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신설) **5. 물품의 매각, 보관, 처분, 손익계산** (신설) **② 전항의 서비스 중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회원을 위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별도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약관 중에서 증권의 신규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양도와 양수, 기타 2022 년 11 월 29 일 이후에 발생하는 증권의 신규 취득이나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전 항과 같습니다**.	2. 증권의 청약과 취득 : 회사는 **투자자 회원**이 증권을 청약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서비스 : 회사는 **투자자 회원**이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자정보제공, **투자자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제 7 조 (생략)	**제 6 조~제 7 조** (현행과 동일)	**제 6 조~제 7 조** (현행과 동일)
제 8 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①~③ (생략) ④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제 8 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①~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제 8 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①~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사유, 승낙 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 정보 또는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4. (생략) 5.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사는 회원들의 혜택을 위해 회원등급, 쿠폰, 포인트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생략)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거래중인 물품의 절차를 완료, 철회, 취소 등을 통하여 종료해야만 합니다. 2. (생략)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생략)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로부터 이용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받는 즉시 자신이 구매하였던 물품의 증권 상의 권리 및 공유지분을 회사에게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 호에 따른 매수가격은 회원과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물품 최초 청약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뒤에는 본 조 제 3 항 제 1 호 다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회원이 본 조 제 3 항 제 1 호 다목의 행위를 할 경우, 당해 회원은 회사에게 직거래 예상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하고 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거래의 상대방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⑤~⑧ (생략) **제 3 장 증권 거래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삭제) (삭제) 1.~2. (현행과 동일) **3.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여 회원 가입승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제 9 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현행과 동일)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로부터 이용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받는 즉시 자신이 구매하였던 **물품의 공유지분**을 회사에게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 호에 따른 매수가격은 회원과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물품 최초 **공동구매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합니다 ④ (현행과 동일) ⑤~⑧ (현행과 동일)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삭제) (삭제) 1.~2. (현행과 동일) **3.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여 회원 가입승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제 9 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거래중인 **증권**의 절차를 완료, 철회, 취소 등을 통하여 종료해야만 합니다. 2.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현행과 동일)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증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로부터 이용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받는 즉시 자신이 **구매하였던 증권 상의 권리 및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회사에게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 호에 따른 매수가격은 회원과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증권에 대한 취득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합니다 (삭제) ④~⑦ (현행과 동일) **제 3 장 증권 거래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① 회사는 물품에 대한 증권 거래의 특성, 청약절차 및 매각방법에 대한 사항을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물품의 매각방법**에 대한 사항을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증권 거래의 특성, 청약절차 및 매각방법**에 대한 사항을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증권 청약 전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투자성향 진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삭제)	② (현행과 동일)
③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물품을 원하는 비율만큼 청약을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삭제)	③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증권**을 원하는 비율만큼 청약을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④ 제 2 항에 따라 청약에 참가한 회원은 공모 완료 시 그 소유권을 「자본시장법 제 4 조」에 의거하여 증권의 형태로써 취득하며, 해당 증권의 거래내역은 회사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삭제)	④ 제 2 항에 따라 청약에 참가한 회원은 공모 완료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며, 해당 증권의 거래내역은 회사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⑤ 증권 청약을 통하여 물품을 매수한 회원의 물품 공유지분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하 "지분권")은 지분권이 표시된 투자 회원 명부를 포함하는 증서의 사서인증 또는 확정일자를 통하여 입증되며, 회사는 관련증서 사본을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 때, 투자 회원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각 증권마다 매월 1 회 이상 사서인증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공동구매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수한 회원의 물품 공유지분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하 "지분권")은 지분권이 표시된 **투자자 명부의** 사서인증 또는 확정일자를 통하여 입증되며, 회사는 관련증서 사본을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 때, **투자자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각 매월** 1 회 이상 사서인증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⑥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완료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공지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⑤ (현행과 동일)
⑦ 서비스의 이용은 24 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전산 시스템 또는 증권 청약이나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나 이용 기간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24 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나 이용 기간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현행과 동일)
⑧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원소유자로부터의 취득가격(경매에서의 낙찰가격 등)을 해당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원소유자로부터의 취득가격(경매에서의 낙찰가격 등)을 해당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삭제)
⑨ 투자회원은 소유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했을 때 당사에 양도 통지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문서로 위 양도 통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물품소유자 회원**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했을 때 당사에 양도 통지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문서로 위 양도 통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삭제:)
⑩ 투자회원이 타인에게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고 해당 내용이 통지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⑥ **물품소유자 회원**이 타인에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해당 내용이 통지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물품소유자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삭제)
⑪ 회사는 투자계약증권 보유자가 양도 시,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 업무에 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보유자**가 양도 시,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 업무에 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제 10 조의 2 (정보의 공개, 공고, 공시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② 회사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사이트에서 그 물품의 투자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③ 회사는 물품의 소유권, 증권의 취득, 투자 회원으로 구성되는 투자자 명부의 정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사이트에서 그 물품의 투자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④ 회사는 증권의 발행, 투자계약의 수행, 청산 기타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투자설명서에 별도의 공개, 공고, 공시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투자계약의 중요한 내용, 투자계약의 수행, 물품 가치의 현저한 변동 기타 회원이나 투자 회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⑥ (생략) ⑦ 회사는 물품소유자 회원에 대하여도 본 조와 동일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합니다.	**제 10 조의 2 (정보의 공개, 공고, 공시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기초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사이트에서 **투자자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③ 회사는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증권의 취득, **투자자 회원**으로 구성되는 투자자 명부의 정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사이트에서 그 **기초자산의 투자자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④ 회사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공동사업**의 수행, 청산 기타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투자설명서에 별도의 공개, 공고, 공시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투자계약의 중요한 내용, 공동사업의 수행, 기초자산 가치의 현저한 변동 기타 회원이나 **투자자 회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⑥ (현행과 동일) ⑦ (현행과 동일)	**제 10 조의 2 (정보의 공개, 공고, 공시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사이트에서 **투자자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③ 회사는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증권의 취득, **투자자 회원**으로 구성되는 투자자 명부의 정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사이트에서 그 **기초자산의 투자자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④ 회사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공동사업**의 수행, 청산 기타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투자설명서에 별도의 공개, 공고, 공시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투자계약의 중요한 내용, 공동사업의 수행, 기초자산 가치의 현저한 변동 기타 회원이나 **투자자 회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⑥ (현행과 동일) (삭제)
제 11 조 (회사에 대한 관리위탁)	**제 11 조 (회사에 대한 관리위탁)**	**제 11 조 (회사에 대한 관리위탁)** **회사는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게 기초자산의 유지·보관·관리·대여·처분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신설)
① 증권을 청약하여 물품을 매수한 투자회원은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수함으로써, 회사가 물품 매수 이전에 진행한 물품에 관한 물품 원소유자와의 계약 체결 기타 부수절차를 각 투자 회원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것임을 추인하고, 회사에게 본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대리권을 소급적으로 부여(위임)합니다. 1. 투자 회원의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원소유자와 물품의 매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 2.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 3. 물품의 처분 4. 위 각 호를 위한 부수절차 및 그에 대한 대리권	①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수한 **물품소유자 회원**은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물품소유자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수함으로써, 회사가 물품 매수 이전에 진행한 물품에 관한 물품 원소유자와의 계약 체결 기타 부수절차를 각 **물품소유자 회원**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것임을 추인하고, 회사에게 본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대리권을 소급적으로 부여(위임)합니다. 1. **투자자 회원**의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원소유자와 물품의 매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 2.~4. (현행과 동일)	(삭제)
②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로서 행사하며,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외에는 회사가 증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로서 행사하며,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외에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삭제)
		(삭제)

③ 투자 회원은 회사에게 소유한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트 내에서 매각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에 대한 투자 회원의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내용이 투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물품소유자 회원**은 회사에게 소유한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물품소유자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트 내에서 매각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소유자 회원**의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의해 매각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동안 물품 매각에 대한 투표 지분율의 동의가 50%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물품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투자 회원들은 회사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투표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공지가 됩니다.	④ 전항에 의해 매각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동안 물품 매각에 대한 투표 지분율의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물품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물품소유자 회원**들은 회사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투표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공지가 됩니다.	(삭제)
⑤ 투자 회원은 사이트에서 직접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 회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보관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물품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물품소유자 회원**은 사이트에서 직접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품소유자 회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보관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물품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삭제)
⑥ 물품 거래의 특성상, 회사는 이미 매각 시도를 동의 받은 물품들에 대해 각 매각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 투자 회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의성실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⑥ 물품 거래의 특성상, 회사는 이미 매각 시도를 동의 받은 물품들에 대해 각 매각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 **물품소유자 회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의성실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품소유자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삭제)
⑦ 회사는 물품을 매각한 금액에서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회원의 소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금액 및 수익률 등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⑦ 회사는 물품을 매각한 금액에서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물품소유자 회원**의 소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물품소유자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금액 및 수익률 등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삭제)
⑧ 회사의 회생·파산·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 16 조 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제 3 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투자 회원에게 분배합니다. 회사에게 본 조 제 1 항 제 4 호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⑧ 회사의 회생·파산·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 14 조** 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제 3 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물품소유자 회원에게 분배합니다. 회사에게 본 조 제 1 항 제 4 호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회원의 증권 거래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사이트 내에서 공모 물품을 확인하고,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를 결정한 회원은 사이트에서 '청약' 기능을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매수내용(매수금액, 물품의 내용, 수량 등)과 결제방법을 입력한 뒤,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절차를 통해 청약을 완료함으로써, 물품의 매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 12 조 (회원의 증권 거래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사이트 내에서 공모 **증권**을 확인하고,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를 결정한 회원은 사이트에서 '청약' 기능을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매수내용(매수금액, **증권**의 내용, 수량 등)과 결제방법을 입력한 뒤,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절차를 통해 청약을 완료함으로써, **기초자산**의 매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③ 증권 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매수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원에게 귀속되며, 매수한 물품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권리를 갖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증권 청약의 경우, 각 증권 청약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 기간 종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회원은 청약과정 또는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를 이유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⑥ 증권에 포함된 투자계약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회원과 회사 사이에서의 특약으로 봅니다. ⑦ 회원은 청약 후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주문 및 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중주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제출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⑧ 회원은 전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거래내용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⑨ 회사는 회원의 청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 15 조에 따른 거래 예치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 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문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 ⑩ 회원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의 청약을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⑪ 회사는 전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청약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의 2 (수익금의 배분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투자회원의 증권 매매내역을 보관·관리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증권에 관한 청산대금(투자계약증권의 원본 및 운용수익 분배금 포함) 등을 수령하여 투자회원에게 지급합니다.		③증권 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매수한 **증권 및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원에게 귀속되며, 매수한 **증권 및 기초자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권리를 갖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증권 청약의 경우, 각 증권 청약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 기간 종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⑤~⑧ (현행과 동일) ⑨ 회사는 회원의 청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현행과 동일) 2. 제 15 조에 따른 거래 **청약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 **청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문하는 경우 4. (현행과 동일) ⑩~⑪ (현행과 동일) **제 12 조의 2 (수익금의 배분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회원**의 증권 매매내역을 보관·관리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증권에 관한 청산대금(투자계약증권의 원본 및 운용수익 분배금 포함) 등을 수령하여 **투자자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삭제)	

② 계좌관리기관은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 등에 대해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내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 등에 대해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내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자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위탁자의 증권 거래 서비스 판매위탁) ① 위탁자는 회사와 별도의 물품기초자산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이에 기반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위탁자가 보유한 물품기초자산의 판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판매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물품기초자산의 판매가 완료되면, 물품기초자산을 구입한 자에 대한 구입 후속절차와 위탁자에 대한 대금정산 절차를 지체없이 수행합니다. ④ 위탁자는 물품기초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회사에게 물품기초자산을 사용한 2 차 저작물(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허락합니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와 위탁자가 체결하는 판매위탁계약서를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 12 조 (위탁자의 증권 거래 서비스 판매위탁)** (현행과 동일)	**(삭제)**
제 14 조 (증권 거래 수수료 및 제 세금) ① (생략) ②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 회원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각자 부담합니다. ...(이하 생략)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회원에게 등급을 부여한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금 등의 지원, 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한 취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여된 혜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제 13 조 (증권 거래 수수료 및 제 세금)** ① (현행과 동일) ②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자 회원**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각자 부담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제 3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④~⑤ (현행과 동일)

제 15 조 (회원의 예치금 등)	제 13 조 (회원의 예치금 등)	제 14 조 (회원의 예치금 등) **회사는 투자계약 및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금, 청약증거금 및 계좌관리에 대한 권한 등을 수행합니다.** (신설)
~~① 회사는 계좌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회원 계좌에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수령하겠다는 조건을 증권과 투자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이하 삭제)
~~②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회사와 계약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며, 회원 명의로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지급이체 처리됩니다.~~	(삭제)	
~~③ 회원의 예치금은 계좌관리에 따르는 이용료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제)	
~~④ 자동계좌이체 및 지급이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모든 분쟁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면책됩니다.~~	(삭제)	
~~⑤ 회원의 고객계좌가 압류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되거나 거래중지계좌가 되어 해당 고객계좌에 잔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상에서 고객계좌의 출금 가능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삭제)	
~~⑥ 압류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되거나 거래중지계좌가 된 고객계좌 또는 회원 명의의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이체 받은 금액은 출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삭제)	
~~⑦ 회원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원의 "예치금 – 청약증거금 – 매수증거금 – 출금제한금액(일시적으로 출금을 제한한 금액) – 출금중인 금액(출금 요청하여 처리중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삭제)	
⑧ 회원의 소득세 과소 징수 등의 이유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징 가능한 금액이 없을 경우 대여금이 생성되며 예치금 잔액이 "-"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미수령 수익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금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의 소득세 과소 징수 등의 이유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징 가능한 금액이 없을 경우 대여금이 생성되며 예치금 잔액이 "-"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미수령 수익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금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⑨ 회원의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탈퇴회원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탈퇴회원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의 2 (투자자보호기금 등)	**제 13 조의 2 (투자자보호기금 등)**	**제 14 조의 2 (투자자보호기금 등)**
① 회사는 투자 회원이 증권의 취득 후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위험이 현실화 되거나 투자자 위험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험이 발생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투자자 회원**이 증권의 취득 후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위험이 현실화 되거나 투자자 위험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험이 발생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투자자 회원**이 증권의 취득 후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투자자 위험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험이 발생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 ③ 회사는 증권의 발행시마다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적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④ 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의 기초가 되는 투자계약이 청산되는 시점에서 투자 회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된 손실과 비율 사전에 고지된 투자자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출되고 지급됩니다. ⑤ 회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총액, 관리방법, 인출 사유 발생, 사용처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공고합니다. ⑥ 물품소유자 회원은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하여 투자 회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마다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적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④ 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의 기초가 되는 **공동사업**이 청산되는 시점에서 **투자자 회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유와** 사전에 고지된 투자자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출되고 지급됩니다. ⑤ (현행과 동일) ⑥ 물품소유자 회원은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하여 투자자 회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마다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적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④ 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의 기초가 되는 **공동사업**이 청산되는 시점에서 **투자자 회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유와** 사전에 고지된 투자자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출되고 지급됩니다. ⑤ (현행과 동일) (삭제)
제 16 조 (서비스 중지) ①~② (생략)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모 물품의 청약 접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생략) 2.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상 증권 청약 접수가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모 물품 3.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증권 청약 접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모 물품 ④ 회사는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제한사유 및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⑤ 제 4 항의 서비스 재개가 회사로부터 합리적인 사유의 고지없이 10 영업일을 초과하여 재개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서비스 운영 중단으로 봅니다. ⑥ 제 5 항에 따른 운영중단 시에는 제 16 조의 2 에 따릅니다.	**제 14 조 (서비스 중지)** ①~② (현행과 동일) (삭제)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제한사유 및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제 3 항**의 서비스 재개가 회사로부터 합리적인 사유의 고지없이 10 영업일을 초과하여 재개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서비스 운영 중단으로 봅니다. ⑤ **제 4 항**에 따른 운영중단 시에는 **제 14 조의 2** 에 따릅니다.	**제 15 조 (서비스 중지)** ①~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모 **증권**의 청약 접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현행과 동일) 2.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상 증권 청약 접수가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모 **증권** 3.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증권 청약 접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모 **증권** ④~⑤ (현행과 동일) ⑥ 제 5 항에 따른 운영중단 시에는 **제 15 조의 2** 에 따릅니다.
제 16 조의 2 (서비스 중단시의 투자계약 수행) ① (생략) ②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 잔존하는 증권과 물품에 대하여, 투자계약의 수행 의무를 부담할 제 3 자를 지정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 투자계약 의무를 수행할 제 3 자 또는 그 제 3 자와의 계약 주요 내용이나 변경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제 14 조의 2 (서비스 중단시의 사업수행)**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 잔존하는 **물품**에 대하여, **사업수행** 의무를 부담할 제 3 자를 지정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 **사업**을 수행할 제 3 자 또는 그 제 3 자와의 계약 주요 내용이나 변경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제 15 조의 2 (서비스 중단시의 공동사업 수행)**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 잔존하는 **증권과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수행** 의무를 부담할 제 3 자를 지정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의무**를 수행할 제 3 자 또는 그 제 3 자와의 계약 주요 내용이나 변경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제 4 장 회원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 17 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①~④ (생략) ⑤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책임자 : 백승한(CTO) 2. 소속 : ㈜투게더아트 3. e-mail : info@weshareart.com **제 18 조~제 20 조** (생략) **제 5 장 면책조항 등** **제 21 조(회사의 면책)** ① (생략) 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증권 거래 서비스의 대상 물품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추정가 및 그 외 물품에 관한 보조설명은 참고를 위한 설명일 뿐 회사에서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는 내용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④ (생략) ⑤ 회사는 각 증권과 투자설명서에 투자계약에 따르는 투자자 위험을 기재하며, 회원은 투자자 위험을 청약 전에 모두 읽고 이해한 후,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증권의 청약에 이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⑦ (생략) **제 22 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민원 접수와 분쟁 조정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기간을 통보합니다. ②~③ (생략) ④ 회사는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담당자 및 분쟁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 4 장 회원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 15 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①~④ (현행과 동일) ⑤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백승한(CTO) 2. 소속 : (주)투게더아트 3. e-mail : info@weshareart.com **제 16 조~제 18 조** (현행과 동일) **제 5 장 면책조항 등** **제 19 조 (회사의 면책)**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동구매 서비스의 대상 물품**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추정가 및 그 외 물품에 관한 보조설명은 참고를 위한 설명일 뿐 회사에서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는 내용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④ (현행과 동일) (삭제) ⑤~⑥ (현행과 동일) **제 20 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민원 접수와 분쟁 조정을 위하여 **민원처리지침과 분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기간을 통보합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회사가 정한 **민원처리지침** 등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담당자 및 분쟁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 4 장 회원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 16 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①~④ (현행과 동일) ⑤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백승한(CTO) 2. 소속 : ㈜투게더아트 3. e-mail : info@weshareart.com **제 17 조~제 19 조** (현행과 동일) **제 5 장 면책조항 등** **제 20 조(회사의 면책)** ① (현행과 동일) ②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추정가 및 그 외 **기초자산**에 관한 보조설명은 참고를 위한 설명일 뿐 회사에서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는 내용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⑥~⑦ (현행과 동일) **제 21 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민원 접수와 분쟁 조정을 위하여 **민원처리지침과 분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기간을 통보합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회사가 정한 **민원처리지침** 등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담당자 및 분쟁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또는 고객담당부서의 장이 분쟁조정담당자가 됩니다. ⑤ 회사는 구체적 분쟁조정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⑥ (생략)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또는 고객담당부서의 장이 분쟁조정담당자가 됩니다. ⑤ 회사는 구체적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⑥ (현행과 동일) **⑦ 회사는 분쟁처리기구에 외부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전문위원을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또는 고객담당부서의 장이 분쟁조정담당자가 됩니다. ⑤ 회사는 구체적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⑥ (현행과 동일) **⑦ 회사는 분쟁처리기구에 외부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전문위원을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 23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생략)	**제 21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현행과 동일)	**제 22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현행과 동일)
제 24 조 (기타조항) ①~③ (생략) ④ 회원의 회사에 대한 통지는 서면 또는 우편으로 회사 본점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제22조에서 정한 회사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생략)	**제 22 조 (기타조항)** ①~③ (현행과 동일) ④ 회원의 회사에 대한 통지는 서면 또는 우편으로 회사 본점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제 20 조**에서 정한 회사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현행과 동일)	**제 23 조 (기타조항)** ①~③ (현행과 동일)) ④ 회원의 회사에 대한 통지는 서면 또는 우편으로 회사 본점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제21조**에서 정한 회사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현행과 동일)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됩니다. 2. (경과조항) 본 약관은 시행일 당시의 물품 소유자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물품의 매각과 청산 전까지 투자 회원과 동일한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품에 대하여는 증권의 투자계약과 동일한 정도의 보관 및 처분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 년 9 월 3 일부터 시행됩니다. **2. 당사는 2022 년 11 월 29 일 부로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통한 모집, 매출이나 이를 통한 물품구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소유자 회원이 보유중인 물품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회원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부칙 2 항은 시행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 년 9 월 3 일부터 시행됩니다. 2. (삭제)